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1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윤준병 · 장종태  
정준호 · 김영환 · 박희승  
황명선 · 차규근 · 이연희  
염태영 · 황정아 · 이재관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,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,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,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5).



#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5의 제목 중 “이전공공기관”을 “이전공공기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전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이전공공기관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전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이전공공기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전공공기관”을 “이전공공기관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의5(<u>이전공공기관</u>의 우선 구매) ① <u>이전공공기관</u>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<u>이전공공기관</u>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이전공공기관</u>의 장은 <u>이전공공기관</u>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<u>이전공공기관</u>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·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29조의5(<u>이전공공기관등</u>의 우선 구매) ① <u>이전공공기관등</u>--- ---<u>이전공공기관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이전공공기관등</u> ---<u>이전공공기관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<u>이전공공기관등</u>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